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6. 25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 6. 3. 마포구청장  
나. 회부일자 : 2013. 6. 7.  
다. 상정일자 : 제178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(2013. 6. 25)  
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( 제안설명자 : 김석원 주택과장 )

## 가. 제안이유

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구획내에서 자력으로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력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아현1-3구역은 사업방식을 자력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었으며,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「도시재개발법」 및 「도시재개발법 시행령」이 폐지되고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등으로 통합되었으므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조례」를 존속시켜 운영 할 필요가 없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」를 폐지함.

## 다. 관련법령

- 「도시재개발법」 및 「도시재개발법 시행령」 폐지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 
제정

## 3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

- 본 조례 폐지안은 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도시재개발법」이 2002년 12월 30일 폐지됨에 따라 「같은 법」 제4조에서 위임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 재개발사업 시행 조례」 전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, 2013. 4. 18. ~ 5. 8. 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.
- 현행법상 재개발 추진 사업은 구청장이 시행자가 되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사업 구역 내에서 자력으로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자력재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, 현재 마포구에서 진행 중인 마포구 아현동 85번지 일대 아현1-3구역 재개발 사업이 자력방식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여 2013.1.24.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됨으로써, 우리 구 관내 재개발사업은 모두 완료된 상태임.
- 또한 우리 구 재개발사업 추진은 2003.7.1. 본 조례의 근거법률인 「도시재개발법」 및 「도시재개발법 시행령」이 폐지되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등 관련 법규를 이미 시행하여 적용해 오고 있어, 이 법을 폐지함은 타당하고 폐지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